

대구대학교과학교육연구소와 (주) 좋은 씨앗의 교육 연계 활성화 협력을 위한 협약서

대구대학교과학교육연구소와 (주) 좋은 씨앗(이하 “양 기관”이라 함)은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며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우수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연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① 양 기관은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②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협력의 범위는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③ 양 기관은 학생연구활동(R&E), 컴퓨터기반과학실험(MBL), 융합인재 교육(STEAM) 프로그램, 교육기부 프로그램 및 과학기술 분야 심화·전문 교육을 위해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한다.

제3조(정보공유)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한다.

제4조(실무협의회) ① 본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양 기관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조(장비활용) 본 협약이 성립된 이후 장비 활용에 관해 요청 사항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공동 활용한다.

제6조(인재활용) 본 협약이 성립된 이후 인력 활용에 관해 요청 사항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적극 협조한다.

제7조(협의조정)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추가 협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협약기간) 본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일방이 서면으로 해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매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9조(협약해지) 본 협약은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당사자의 판단에 따라 협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이러한 해제/해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제10조(협약의 증명) 이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3년 6월 26일

대구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소 장 임 성 민

(주) 종 은 씨 앳

대 표 이 사 성 병 근

